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현실정에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불용품의 매각적정등 물품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가.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정함.
- 나. 불용품 매각시 감정의뢰단가 상향조정  
불용품 매각시 감정기관외 대상물을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이상인 물품"에서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함.

### 3. 근거법령

- 가. 지방재정법 제91조 제1항
- 나.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3항
-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제130조 제1항

### 첨 부

1.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3. 근거법령

##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물품"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은"으로 한다.

제11조의 2중 "물품당 단가 50만원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제17조 제4항중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이상인 물품에"를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로 한다.

제24조 제2항중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에"로 하고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을 "정수물품"으로 한다.

### 부 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⑤~⑧ (생 약)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생약)  ②본 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운용카드, 소모품 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u>중요물품</u>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및 운용카드에 “ <u>중요물품</u> ” 및 “ <u>정수물</u> 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⑤~⑧ (생 약)  제24(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생약)  ②..... ..... ..... ..... ..... ... 정수물품에 ..... 정수물 품 .....
③~④ (생 약)	③~④ (생 약)

## 關 係 法 令 拔 萃

### 地方財政法

第 91條 (物品의 管理와 그 事務의 委任)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物品을 管理하되, 소속 公務員에게 委任하여 物品을 管理하게 할 수 있다.

第100條 (物品의 處分 등) ①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사용 또는 處分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處分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그 物品에 대하여 不用의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用의 決定을 한 物品으로서 賣却하는 것이 不利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賣却할 수 없는 物品이 있을 때에는 이를 廉棄할 수 있다.

③物品은 賣却을 目的으로 한 것이거나 不用의 決定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賣却할 수 없다.

### 地方財政法施行令

제 96조 (잠종재산가격의 평정통) ①잠종재산을 매각 또는 교환하는 경우의 당해 재산의 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②제1항의 시가는 인근지의 매매실례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시가표준액이 있을 때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산가격이 300만원미만으로 추정되는 재산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0조 (물품의 중감 및 현제액보고서의 작성) ①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물품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 [ 1988. 5. 27  
조례 제1630호 ]

개정 1989. 2. 3 조례 제1691호  
1990. 5. 11 조례 제1786호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도지사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물품관리관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점수, 반환, 수리 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관리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도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의한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둘째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판과장

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경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 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주관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서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3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수직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매입물품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 제11조 (기증품의 취득) ①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한다.

## 제2절 출    납

제12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에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전적가격
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적정가격

제15조 (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입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훠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의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증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훠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기타 내구년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직할시·도(시·군 포함)와 경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직할시·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 (불용품의 대각)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대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 3. 동일물품의 총량

##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폐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전적 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처분조사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경리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의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 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일회화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한다.

## 제3절 보 관

제19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 (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 책임을 진다.

제21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물품출납원은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 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는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부쳐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도지사 또는 청·소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청·소의장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도지사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제4절 장            부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소모품대장

### 5. 도서대장

-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루인을 찍어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수 있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를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천현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